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0조제3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화 실)